

제2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1. 개요

- 회 의 명 : 2021년 제2회 정기이사회
- 일 시 : 2021.12.22.(수) 10시
- 방 법 : 화상회의
- 참석대상 : 16명(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12명, 감사 2명)
- 참 석 자 : 16명(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12인, 감사 2명)
- 안 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심의결과
제388호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원안의결
제389호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제390호	정관 개정(안)	원안의결
제391호	인사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제392호	임원 인사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제393호	보수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제394호	임직원퇴직금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제395호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제396호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 일괄 개정(안)	원안의결
제397호	명시이월 승인(안)	원안의결
제398호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의결

2. 논의 결과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

- 간사 성원 보고(재적이사 14명 중 14명 참석)

의결안건

① 의안번호 제388호 :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주요 내용

-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18개), 양성평등 가치의 전략적 확산(7개), 서울형 안심 돌봄체계 구축(8개), 성장주도 경제기반 조성(5개), 공정경영 가치 선도(3개)

- 2022년 예산(안) 22,883,914천원으로 2021년 대비 12.3% 증가, 출연금 16,050원, 자체수입 4,272백만원 증가
- 참석자 주요 의견
 - 의견 없음
- 의결사항
 - 정관 제26조(의결방법)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4조(개의 및 의결)에 의거 출석 이사 14명 중 14명이 찬성하여 원안의결 함

② 의안번호 제389호 :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안)

- 주요 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별 직급체계 정비 및 본부 규모 조정, 중간단위 조직 신설
 - 전략기획관, 3본부, 8실 체제 개편
 - 기구표 상 '기획위원회' 표시 삭제(자문 기능 유지)
- 참석자 주요 의견
 - ○○○ : 실장급 관리자가 생기면서 행정상, 사업 진행상 설득하는 과정이 길어질 수 있고, 1급 정원은 3명이나 실제 1명으로 직무대리와 겸직이 많아지는 구조로 업무과중이나 수직 단계 고착되는 것은 아닌가? 성평등, 양성평등 단어도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야 하는가? 전략 기획 반영시 직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좋겠음.
 - ○○○ : 본부장과 전략기획관은 1급 총4명이고 정원은 3명인데 현재 1명으로 정원포에 1급을 반영하지 않음, 향후 단계적으로 진행 예정임. 실장이 생기나 기존 본부가 없어지고 축소 및 통합되면서 대체되는 부분이 있어 실제로 관리자가 많은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음. 서울시 사업을 기획하고자 조직 개편에 반영한 부분임, 추후 운영하면서 반영할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할 계획임
 - ○○○ : 비전이나 조직 개편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더 밀착하고 정책을 리딩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실행자로서 내부 구성원의 의견 또한 잘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강조되서 나오게 된 맥락을 살펴 보아야 함. 젠더 갈등이 생기는 이유를 성찰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게 성평등임. 성평등에 대한 말을 당장 대처하지 못하더라도 고민하고 재고해 봐야 함.
- 의결사항
 - 정관 제26조(의결방법)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4조(개의 및 의결)에 의거 출석 이사 14명 중 14명이 찬성하여 원안의결 함

③ 의안번호 제390호 : 정관 개정(안)

○ 주요 내용

- 「투자·출연기관 주요 규정 현황점검 및 정비 추진계획」(서울시 공기업담당관 제585호, 2021.5.24.)에 의거하여 정관에 기구표 및 정원 표 추가

○ 참석자 주요 의견

- 의견 없음

○ 의결사항

- 정관 제26조(의결방법)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4조(개의 및 의결)에 의거 출석 이사 14명 중 14명이 찬성하여 원안의결 함

④ 의안번호 제391호 : 인사규정 개정(안)

○ 주요 내용

- 인사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근거 명확화, 위원회 심의 사항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사항 보완
- 직위 해제 대상에 '강등' 추가 및 대기 명령자에 대한 조치 신설
- 비위 행위자에 대한 승진제한, 표창대상 제외, 징계의 기간 및 신분 명확화
- 육아휴직 1회 분할 사용 및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확대
- 직급별 채용 자격 기준에 학력, 경력의 '해당분야' 명시

○ 참석자 주요 의견

- 의견 없음

○ 의결사항

- 정관 제26조(의결방법)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4조(개의 및 의결)에 의거 출석 이사 14명 중 14명이 찬성하여 원안의결 함

⑤ 의안번호 제392호 : 임원 인사규정 개정(안)

○ 주요 내용

- 직무 정지 기간 중 보수 반액 감액 및 직무 관련 수당 지급 제외
- 상임임원의 근무시간은 복무규정 준용

○ 참석자 주요 의견

- 의견 없음

○ 의결사항

- 정관 제26조(의결방법)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4조(개의 및 의결)에 의거 출석

이사 14명 중 14명이 찬성하여 원안의결 함

⑥ 의안번호 제393호 : 보수규정 개정(안)

○ 주요 내용

- 2021년 고등학교 등 전학년 무상 교육 실시에 따른 학비 보조수당 지급 규정 삭제
- 신설 직위에 대한 직책 수당 지급 명시, 직급수당 폐지, 특수업무수당 신설
-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및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제한 조항 신설

○ 참석자 주요 의견

- 의견 없음

○ 의결사항

- 정관 제26조(의결방법)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4조(개의 및 의결)에 의거 출석 이사 14명 중 14명이 찬성하여 원안의결 함

⑦ 의안번호 제394호 : 임직원퇴직금규정 개정(안)

○ 주요 내용

- 퇴직금 이외 별도 특별공로금을 지급하는 규정 삭제

○ 참석자 주요 의견

- ○○○ : 특별공로금은 업무상 사망, 질병, 부상 등을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데 보험이나 안전 장치 같은게 있어야 함.
- ○○○ : 공제보험을 하면 특별공로금을 대체할 수 있는 부가적인 보상이 되므로 도입하는게 어떨까 생각함.
- ○○○ : 타기관의 경우 직원 단체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내년에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추진 예정

○ 의결사항

- 정관 제26조(의결방법)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4조(개의 및 의결)에 의거 출석 이사 14명 중 14명이 찬성하여 원안의결 함

⑧ 의안번호 제395호 :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 주요 내용

-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3월 말에서 12월 말로 변경
- 기본계획안 확정을 이사회 의결에서 대표이사 결재로 변경
-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개정

※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의결 및 서울시 승인 완료에 따라 조건부 개정

○ 참석자 주요 의견

- 의견 없음

○ 의결사항

- 정관 제26조(의결방법)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4조(개의 및 의결)에 의거 출석 이사 14명 중 14명이 찬성하여 원안의결 함

⑨ 의안번호 제396호 :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 일괄 개정(안)

○ 주요 내용

-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안)에 따른 규정상 부서 명칭과 직위 명칭 변경

- 대상 규정 : 이사회 운영규정, 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회계규정, 물품관리규정

○ 참석자 주요 의견

- 의견 없음

○ 의결사항

- 정관 제26조(의결방법)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4조(개의 및 의결)에 의거 출석 이사 14명 중 14명이 찬성하여 원안의결 함

⑩ 의안번호 제397호 : 명시이월 승인(안)

○ 주요 내용

- 서울시 일부 수탁/기부과제의 기간이 2022년 1~4월까지 계약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기한 내에 추진하고자 함.

○ 참석자 주요 의견

- 의견 없음

○ 의결사항

- 정관 제26조(의결방법)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4조(개의 및 의결)에 의거 출석 이사 14명 중 14명이 찬성하여 원안의결 함

⑪ 의안번호 제398호 :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

○ 주요 내용

- 2021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정 평가 결과 통보(서울시여성가족재단)(서울시 공기업담당관-13548호, 2021.12.9.)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성과급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 경정

○ 참석자 주요 의견

- 의견 없음

○ 의결사항

- 정관 제26조(의결방법)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4조(개의 및 의결)에 의거 출석 이사 14명 중 14명이 찬성하여 원안의결 함